

#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동욱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1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1월 08일  
발 의 자: 김동욱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규남, 김길영, 서상열,  
아이수루, 이민옥, 이소라,  
, 이효원, 장태용, 정준호  
의원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성적(性的)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고 있음.
- 버스 이용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음.
-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버스 운전사와 시민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시내버스 안에서 성적(性的)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10조의2제4항)
- 나.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(안 제10조의2제5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 첨부

##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시민은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(性的)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- ⑤ 시민은 시장이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의 2(시민의 권리와 의무)에 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손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  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   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      이정수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        김지혜

☎ 02-2180-7953

e-mail : kjh0123@seoul.go.kr